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62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김재섭 · 최수진 · 김선교
김미애 · 김은혜 · 엄태영
박수영 · 김용태 · 서천호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희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10)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5. ----- ----- ----- ----- ----- ----- ----- ----- ----- ----- -----.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가.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한국마사회법」 제6	10) -----

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 소 <단서 신설> 11) (생략) 나. (생략) 6. ~ 8. (생략)	----- - <u>다만,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 한다.</u> 11)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	--